

전남소방 '소방불량' 시설 118곳 적발

319곳 특별조사...적발시설 '입건·과태료·시정명령' 조치

물류창고·노후공장 141곳·필로티구조 건축물 27곳 등 적발

전남소방본부가 도내 소방 불량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다. 전남소방본부는 대형사고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8곳에서 불량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입건·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남소방본부는 전남 20개 소

방서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필로티구조 건축물, 고시원, 대형 물류창고, 노후공장 등 319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필로티는 지상층(1층)을 외벽 없이 개방한 구조다. 조사 결과 물류창고·노후공장 141곳, 필로티구조 건축물 27곳, 고시원

18곳, 공장장 11곳 등 총 118곳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118곳에는 시정명령을 발부하고 이중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지적을 받은 6곳은 입건 조치했다. 또 11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9곳은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시·군에 이첩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위험물 안전관리업무 소홀', '소방 시설 폐쇄·경보설비', '피난설비 관리 소홀',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태만', '불법 건축물 증축 사용' 등이다.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화재 취약 대상 위주도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겠다"며 "건축물 관계자 화재예방 지도와 상담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담양소방, 추석 전 주거용 컨테이너 등 취약시설 지도방문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추석 전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관내 주거용 컨테이너 등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완도소방, 추석 연휴 맞이 취약시설 관서장 현장방문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추석연휴 대비 화재 위험성이 크고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시설의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위하여 관서장 현장 지도 방문을 24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추석 대비 피난약자시설 안전컨설팅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광양시민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화재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피난약자시설 안전컨설팅에 나선다고 22일 전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무안소방, 추석 연휴 대비 소방관서장 화재안전컨설팅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난 25일 군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무안전통시장을 방문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안=이성기기자



광주 남부소방, 추석연휴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지도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화재예방과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방문해 화재예방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보성경찰, 군의회 방문 치안설명회 실시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26일 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에 방문하여 보성군의회 의원들 상대로 '더 안전한 보성을 만들기 위한' 2023년 범죄예방 환경(CPTED)사업 예산확보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추석 앞두고 잇단 벌 쏘임 사고 "각별한 주의"를

전남 8월 한 달 382건 발생...이 달 들어 2명째 사망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 쏘임 사고가 잇따라 벌초·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2시 45분께 전남 진

도군 조도면 한 야산에서 70대 여성 A씨가 조카 50대 남성 B씨 등 2명이 벌에 쏘였다. 여러 차례 벌에 쏘인 A씨는 보건지소를 거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카 B씨도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9시 12분께에는 완도군 군외면 한 야산에서 50대 남성 E씨가 묘사 묘사 주변 벌초 작업을 하다가, 말벌에 쏘여 병원에서 숨졌다. 전남 오전 11시 14분께에는 화순군 춘양면 한 야산에서 50대 남성 C씨가 머리 등지에 벌을 쏘여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54분께 영광군 법성면에서도 벌초를 하던 60대 남성 D씨가 벌에 쏘여 통증을 호소,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벌 쏘임은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추석 전 벌초 등 외출이 잦아지는 8월~9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이 달 들어 전남에서 벌 쏘임 382건이 발생, 2명이 숨졌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간 지역 내 벌 쏘임 314건을 크게 웃돈다. 소방 당국은 "추석 성묘철이 다가오면서 벌초 도중 벌쏘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벌에 쏘이면 현기증·구토·얼굴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말벌에 쏘일 경우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벌초 중 벌침을 발견하면 즉시 자리를 피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수·화장품 등 향이 강한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밝고 화려한 의류는 피해야 한다고도 했다. 벌에 쏘인 뒤에는 금지 말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밀어 제거해야 하며, 얼음이나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면 부기·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한산한 모습 보이는 시장

추석 연휴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전북 전주시 모래네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자문위 "코로나 새 변이, 우리나라서 자체 발생할수도" 우려

정기적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겨울철 새 변이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계산으로는 지난 7월이 오미크론 다음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다행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며 "하루 60만명씩 확진될 당시 우리나라 자체에서 변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로 (변이 발생 가능성)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대규모 감염이 동시에 이뤄질 때 발생한다. 바이러스 복사가 1만 번 가량 이뤄지면 한 번 정도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원리다. 아직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는 변이 바이러스가 최초 보고된 적은 없지만, 겨울철 재유행이 오면 변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변이는 다 해외에서 들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절대 게을리해선 안 된다"며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PCR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입국 후 코로나 검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 위원장은 또 "감소세가 지속되든지,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든지, 겨울철에 대유행이 오든지 등 여러 시나리오를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상가임대 계약 뒤 입점포기...권리금 안줘도돼"

1·2심 승소...대법 "이용 못한 것 아냐" 파기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뒤 스스로 입점을 포기했다면, 상가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B씨가 분양받은 상가를 부동산중개업 용도로 임차하기로 했다. 양측은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중 350만원을 계약금으로, 2000만원은 권리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했다.

이들의 계약에는 건물을 빌린 이의 사정으로 입점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특약도 포함됐다. 그런데 A씨는 상가 입점을 앞두고 돌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입점도 거부하는 중이라고 맞서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권리금은 점포의 시설 등을 일정기간 이용한 대가"라며 "계정조차 하지 않은 점포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권

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돼 임차인이 빌린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권리금 반환의무가 생긴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미 유효한 계약에 따라 건물을 빌려줬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B씨 측의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주장·증명은 없다"면서 "A씨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직접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줌)할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뉴시스